

울릉도·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
일부개정법률안
(서삼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00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6. 23.

발 의 자 : 서삼석·이개호·김원이
이병진·문금주·조계원
박지원·김동아·박수현
위성곤·주철현·조인철
김영배·서미화 의원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토 외곽 섬들은 영토 최전방 지역의 국가 주권 수호의 실질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교통·교육·문화 등의 분야에서 여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음.

현행법은 섬 주민을 위한 정주환경 조성과 생활기반시설의 정비·확충 등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섬 주민의 유류 및 생활필수품 운반과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편의 선박의 운항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비용 등의 문제로 해상교통 운항 중지 및 항로 단절 등이 빈번히 발생하는 등 섬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음.

또한 국토 외곽 섬의 지자체들이 섬 관광을 통한 지역 경제 발전과 소득증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섬 관광 촉진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

되어 있지 않아 섬 관광객 유치와 시설 조성에 어려움을 겪는 등 교통·교육·문화 등의 분야에서 섬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특단의 지원이 시급한 현실임.

이에 국가가 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게 국토 외곽 먼섬을 지원하도록 섬의 해상교통 및 관광 활성화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국토의 외곽에 위치한 국토 외곽 섬들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고 섬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섬 인구소멸 위기 대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(안 제9조 등).

울릉도·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울릉도·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교육부장관은 국토외곽 먼섬의 교육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에 따른 교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원할 수 있다.

③ 교육부장관은 국토외곽 먼섬 주민의 자녀가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.

제13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(정주생활지원금 지원) ① 국가는 국토외곽 먼섬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국토외곽 먼섬에 일정한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 대하여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1.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해당 국토외곽 먼섬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자

2.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

② 제1항에 따른 정주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, 지급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4조(노후주택 개량 지원) ① 국가등은 국토외곽 먼섬에 거주하는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후화된 주택의 신축 및 개수·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5조(선박 운항 지원) ① 국가등은 국토외곽 먼섬으로 유류 및 생활 필수품을 운반하는 선박의 운항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국가등은 국토외곽 먼섬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운항되는 여객선 등의 운항 및 안전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16조(유류비 과세특례) 국가등은 국토외곽 먼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섬지역 소멸위기 극복을 위하여 주민이 구입하는 유류비에 대하여 조세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7조(국토외곽 먼섬 여행객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) ① 국토외곽 먼섬의 관광객 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정주여건 향상을 위하여 국토외곽 먼섬 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·부가

가치세·개별소비세·주세·교육세·농어촌특별세·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.

② 국토외곽 먼섬 여행객이 해당 섬에서 구입·소비하는 관광 관련 재화·용역은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.

제18조(불법조업 방지시설 지원 등) 국가등은 국토외곽 먼섬 인근에서 조업하는 어민의 안전조업을 보장하고 불법조업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교육비 등의 특별지원)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9조(교육비 등의 특별지원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 ② 교육부장관은 국토외곽 먼섬의 교육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에 따른 교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원할 수 있다.
<u><신 설></u>	③ 교육부장관은 국토외곽 먼섬 주민의 자녀가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.
<u><신 설></u>	제13조(정주생활지원금 지원) ① 국가는 국토외곽 먼섬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국토외곽 먼섬에 일정한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 대하여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<신 설>

<신 설>

1.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해당
국토외곽 먼섬에 주소가 등록
되어 있는 자

2.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
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

② 제1항에 따른 정주생활지원
금의 지급대상, 지급기준 및 방
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
령으로 정한다.

제14조(노후주택 개량 지원) ①
국가등은 국토외곽 먼섬에 거
주하는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
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
다.

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정주
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후
화된 주택의 신축 및 개수·보
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
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5조(선박 운항 지원) ① 국가
등은 국토외곽 먼섬으로 유류
및 생활필수품을 운반하는 선
박의 운항에 필요한 비용을 지
원할 수 있다.

② 국가등은 국토외곽 먼섬 주
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운항

<신 설>

<신 설>

되는 여객선 등의 운항 및 안전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16조(유류비 과세특례) 국가등은 국토외곽 먼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섬지역 소멸위기 극복을 위하여 주민이 구입하는 유류비에 대하여 조세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7조(국토외곽 먼섬 여행객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) ① 국토외곽 먼섬의 관광객 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정주여건 향상을 위하여 국토외곽 먼섬 여행객이 지정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·부가가치세·개별소비세·주세·교육세·농어촌특별세·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.

<u><신 설></u>	<u>② 국토외곽 먼섬 여행객이 해당 섬에서 구입·소비하는 관광 관련 재화·용역은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.</u> <u>제18조(불법조업 방지시설 지원 등) 국가등은 국토외곽 먼섬 인근에서 조업하는 어민의 안전조업을 보장하고 불법조업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</u>
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